

2022년도 제6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2. 4. 20.(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박성호(분과위원장 대행), 강태욱, 김경숙, 노정동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2-52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210건(안건번호 제2022-22982호~23454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2-22982호(순번 1번)는 스튜디오 촬영 업체가 홈페이지에 직접 제작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대중가요 음원을 이용한 건으로, 주어진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한 점, 권리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사안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2-22983호~23003호(순번 2번~22번)는 ●●, 웹하드 등 웹사이트에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23004호(순번 23번)는 ㉹㉹㉹ 블로그에서 타인의 ○○○ 영상을 임베디드 링크 형식으로 전송 중인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 이용약관에 따라 권리자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영상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2-23005호(순번 24번)는 ■■■ 블로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불법복제물을 계속적·영리적으로 이용 중

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합법적인 경로로 저작물을 이용할 유인이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171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15개에 접속할 수 있는 1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 2022-11509호)

- 회의결과: 심의대상인 총 1개의 URL 정보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해당 URL 정보가 '구글'에서 계속 검색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시정요구 및 보호원의 대체사이트 검색결과 제한 요청의 효과가 감소하며 새로운 불법복제물 이용자의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음. 별지의 심의의결(안)과 같이 심의대상 URL 정보의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6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2-5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2쪽 내지 5쪽의 OSP명, 게시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

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게시물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8쪽 내지 13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0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1,210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민원인이 익명으로 신고한 건임. 스냅촬영 스튜디오 업체인 'ㄱㄱㄱㄱ ㄱㄱ'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영상에 대중가요 '▲▲ ▲▲▲ ▲▲▲▲ ▲▲' 음원(이하 '본건 음원'이라 함)을 이용한 사안임. 총 1개 게시물임.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업체 공식 홈페이지의 '○○○○○○' 게시판에 게시된 약 8분 분량의 결혼식 영상으로, 해당 업체가 직접 제작한 영상을 홍보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본건 음원은 심의대상 게시물의 ☆☆ ☆☆부터 ■■■■■까지 총 ◇◇ ◇◇◇에 걸쳐 전체 분량이 이용되었음. 영상물은 본건 음원뿐만 아니라 특정 고객의 결혼식 영상, 음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게시자는 사이트 관리자, 즉 운영자로 추정됨. 본건 음원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에게 권리가 귀속할 것으로 추측됨.

해당 게시판에는 심의대상 게시물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영상이 게시되어 있으며,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대중가요 음원을 각 1개씩 이용하고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업체는 전문 스튜디오로 저작물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권리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A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또한 대심제(對審制)가 아닌 우리 심의의 특성상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

- C 위원: 두 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주어진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한 점, 권리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사안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결 의견임.

- A, B,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의 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22번은 민원인들이 익명으로 신고한 건으로, 각 '☒☒' 카페, ☆☆ 등 웹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임. 총 36개 게시물임.
(순번 2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어문저작물의 텍스트 파일을 다운로드 형태로 제공 중임. 전체 분량을 다수의 파일로 분할하여 제공하고 있음.
(순번 3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특정 소설의 전체 분량을 다수의 게시물로 분할하여 제공 중인 사안임.
(순번 4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어문저작물 '▽▽▽▽'를 2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위원: 순번 2번~22번은 합법 시장에서 판매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시장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A, B,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2번~22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임. ♠♠♠ 이용자 ‘◆◆◆◆’가 자신의 블로그 ‘▣▣▣▣▣’에 “♡♡♡♡♡♡ ♡♡♡ ♡♡♡ ♡♡♡ ♡♡”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관련 ◁◁◁ 영상을 이용한 사안임. 총 1개 게시물임.
(순번 23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은 권리자인 ♣♣♣의 공식 유튜브 채널 중 하나인 ‘▣▣▣ ▣▣▣▣▣’에 게시된 영상으로, 게시자는 이를 임베디드 링크 형식으로 제공 중임.
●●● 이용약관에서는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자에게 다른 사용자에게 대하여 콘텐츠를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업로드하는 자는 영상 각각의 공개 범위, ‘퍼가기’ 허용 여부 등을 변경하여

이용허락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음. 따라서 권리자는 '퍼가기' 금지 등의 조치를 통하여 영상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 영상을 확인한 결과, '공유' 탭을 통한 '퍼가기'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음.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는 해당 기능을 이용한 영상의 이용을 허용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은 위 '퍼가기' 기능을 통하여 제공되는 영상과 동일한 영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 이용약관에 따라 권리자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영상을 이용하고 있는 바 이는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부결 의견임.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23번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의 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임. ◀◀◀ 블로그에서 방송 '◆◆ ◆◆◆'를 제공 중인 사안임. 총 1개 게시물

입.

(순번 24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위 방송 3편을 포함한 영상 4개와 해당 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사진 18개, 관리자 채널의 직접링크 및 광고 배너 2개로 이루어져 있음. 각 저작물의 내용은 안건 표와 같으며, 게시자는 [X][X][X][X] [X] 및 [X][X][X]에서 제공 중인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 업로더를 통해 재업로드하였음. 이는 관리자의 영상 이용 시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광고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더불어 심의대상 블로그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 중인 게시물이 다수 확인됨.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위원: 관리자는 ♥♥♥ 및 ▲▲▲를 통하여 영상을 제공하면서, 이에 따른 광고 수익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더불어 관리자는 직접링크 또는 임베디드 링크 형태의 이용만을 허용하고 있는 바, 게시자는 관리자가 허용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저작물을 복제하여 전송하고 있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관리자가 합법적인 경로로 제공하는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됨. 합법 시장 및 저작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공정이용으로 판단하기에도 어려움.

- C 위원: 앞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모두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임. 가결 의견임.
- A, B,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24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25번~47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1,171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음악 'TOMBOY'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6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악저작물을 판매 중인 사안임.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의 2022. 4. 10.자 인기 순위 100위까지의 곡을 압축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 (방송 '술꾼도시여자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32번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방송 '술꾼도시여자들'을 무료로 제공 중인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2021. 10. 22. 방영 시작한 국내 웹드라마이며,

TVING에서 유료로 이용 가능함.

(만화 '하이큐'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82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하이큐'를 21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만화 1권부터 45권 완결편까지 PDF 형태의 다운로드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저작물은 네이버 시리즈 등을 통하여 유료로 이용할 수 있음.

(방송 '파친코(202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65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방송 '파친코(2022)' 6화를 16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2022. 03. 25. 부터 방영한 드라마이며, 애플 tv+에서 유료 서비스 제공 중임.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순번 25번~473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25번~473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22982호(순번 1번)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2-22983호~23003호(순번 2번~22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2-23004호(순번 23번)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2-23005호(순번 24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2-23006호~23454호(순번 25번~473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3쪽부터 18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11509호(순번 1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박성호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6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6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4. 27.

분과위원장 대행 박성호

위원 강태욱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